

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

영주시에서는 2024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4. 1.

영 주 시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4. 4. 8.(월) ~ 4. 19.(금) 18:00까지
- 사 업 비 : 약 2백만원(도 600, 시 1,400) * 자부담 별도
- 사 업 량 : 완속충전기 2기 * 지원물량은 신청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기(충전기별 차등 지급)

2. 신청대상 및 자격

- ① 신청일 기준 영주시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전기자동차를 소유한 (또는 '24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개인 또는 기업(법인) 중 영주시 관내 거주지 또는 사업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자
 - *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련 타 보조금을 미지원 받은 경우에 한함
 - * 초소형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과금형 휴대용충전기에 한하여 지원
 - * 지상 설치 우선 지원(지하주차장 설치 지양)
- ②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우선 지원
- ③ 영주시에 지방세 등 (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에 한함
- ④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경우 개인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 불가

3. 보조금 지원 충전기(1가지 이상 충족 시 지원가능)

-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등록된 수행기관의 충전기
- 경상북도 내 기업에서 생산된 충전기
- 기타 비공용 충전기 전문 생산 업체에서 제작된 충전기
 - * 전기공사업 면허 소지
 - * KC인증서
 - * 전기안전인증서
 - * 책임배상물 보험 가입
 - * 국내제조 제품

4.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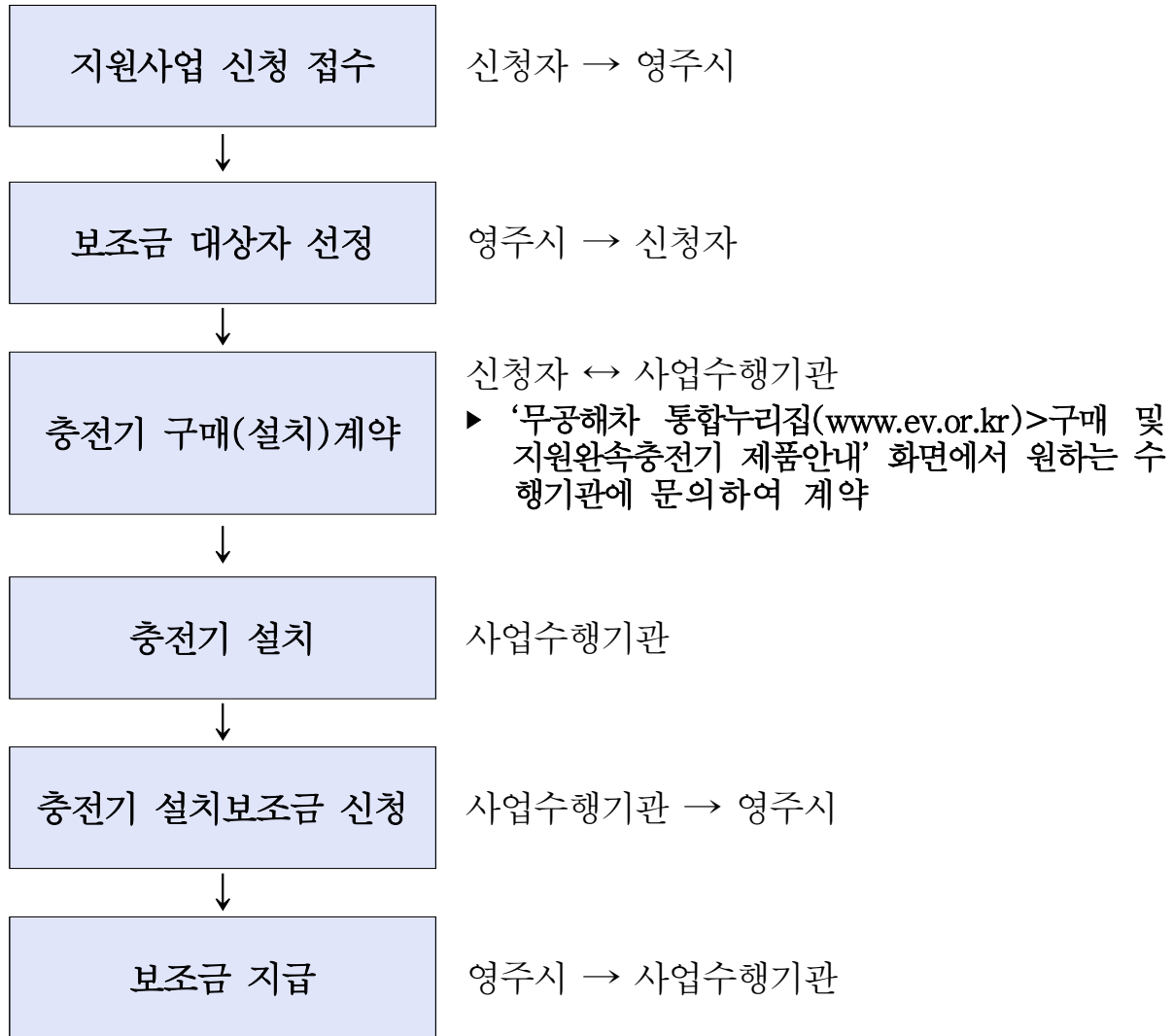
- 완속충전기 구매·설치 비용의 50%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50% 필수)

(단위 : 만원/기)

구 분		1기	2~5기	6기 이상
완속충전기 (C타입, AC)	11kW이상	100	90	75
	7kW ~ 11kW미만	90	80	70
키오스크 충전기		90(2기)		
전력분배형 충전기(7kW)		70(2기)		
과금형콘센트		30		

-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말하며, 보조금 한도 초과 비용은 설치희망자 등이 부담
- 키오스크 충전기는 기본 2기를 지원하며, 1기 추가 시 추가보조금 45만원 지원
- 전력분배형 충전기(7KW)는 최대 2기까지 전력분배할 때 지원하며, 기본2기에 70만원 지원
- 과금형콘센트의 경우 기존 전기배선을 활용한 단순교체가 가능함. 단 누전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과금형콘센트 운영 사업수행기관은 충전정보의 교환, 전력 분배 또는 차단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동일 장소에 설치된 과금형콘센트는 모두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하나의 차단기에 최대 2기의 과금형 콘센트만 설치 가능

5. 지원사업 추진절차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 4. 8.(월) ~ 4. 19.(금)
- 신청시간 : 09:00 ~ 18:00 ※ 공휴일(토·일요일 포함)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서면) 접수
- 접수처 : 경북 영주시 시청로 1, 영주시청 환경보호과(보건소 신관 2층)
(☎054-639-6757)
- 제출서류(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

(공통) 제출 서류

- ①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서식1]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서식2]
- ③ (개인) 주민등록초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 ④ 전기자동차 차량등록증
- ⑤ 설치희망지 등기부등본 1부
- ⑥ (신청자와 설치희망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 부지사용 승낙서[서식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우선순위) 제출 서류

차상위 이하 계층	차상위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등록증
국가유공자(상이, 독립 등)	국가유공자 등록증
다자녀(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족관계 증명서

7. 사업수행의 대상(1가지 이상 충족 시 지원가능)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전사업자와 충전기 제조사로 한국환경공단 에 충전기 제품이 등록된 사업자
 - *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열람 가능
- 일정 자격기준 이상의 제품을 생산·납품할 수 있는 충전기 제작사
 - * 전기공사업 면허 소지
 - * KC인증서
 - * 전기안전인증서
 - * 책임배상물 보험 가입
 - * 국내제조 제품

8. 대상자 선정

- 신청자 중 선정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후 개별 연락
 - 문자메세지(SMS) 또는 공문 발송
- 선정기준

순 위	지 원 대 상
1	우선순위 해당자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상이·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2	사업장
3	단독주택

- 지하주차장 설치, 완속충전기 기설치된 장소는 최하위 순위로 조정
- 선정순위 내 동순위자는 ①전기자동차 보유대수 > ②접수일로부터 영주시 연속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
- 신청기간 내 지원물량 미달인 경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 선정 대상자는 희망 제조사와 충전기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액을 제외한 충전기 설치대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

9. 보조금 지급

- 지급 신청기한 : 2024. 6. 28.(금) 18:00까지
 - 지급신청 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포기로 간주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
 - (방문)18:00까지, (등기우편)신청기간 내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보조금 지급 제출서류

- ①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조금 지급 신청서 [서식4]
- ② 충전기 설치 계약서
- ③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서식7]
- ④ 위임장 [서식5]
- ⑤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설치완료 확인서 [서식6]
- ⑥ 사업자등록증(제조·판매사)
- ⑦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검사) 결과서
- ⑧ 하자보증서
- ⑨ 세금계산서
- ⑩ 통장사본(제조·판매사)
- ⑪ 사업수행기관 적격 확인 서류
 - 전기공사업 면허, KC인증서, 전기안전인증서, 책임배상물 보험가입증서, 국내제조제품 등록증

10. 기타사항

- 충전기 설치장소는 영주시 관내만 가능
- 충전기 설치장소는 이면도로 및 타인의 통행에 불편이 있는 장소가 아닌 적합한 주차공간이어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환경부)」에서 정하는 현장조사, 설계도서 작성, 설치공사 등 절차에 따라 충전기를 설치하여야 함
- 설치한 충전기는 원칙적으로 충전기 소유자가 유지·관리 등의 책임이 있으나, 충전기 설치 후 최소 2년간 제품하자 등 사후품질 책임은 충전기 제조사에 있음
- 사업수행기관은 신청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 소홀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보조금 대상여부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충전기 설치를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충전기 수량, 제품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영주시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충전기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 희망자에게 하자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함
- 구조물 및 제품의 A/S 주체는 사업수행기관이므로 신청자와 계약체결 시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정해함
- 국가 또는 한전의 충전기 지원사업과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추후 중복 신청 발견 시 사업을 취소하고 지급된 보조금은 전액 환수
- 충전기 설치장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영주시청은 개입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는 사업수행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 신청자 및 사업 참여자 등은 안전한 충전기 사용 및 설치를 위해 적극 노력 해야하며, 경상북도 소방본부의 안전관리 사항에 협조해야 함
- 충전기 사용요금은 사업수행기관이 공공완속충전기 사용요금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위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기준결정은 「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환경부)」, 「204년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설치 운영 및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경상북도)」, 영주시 환경보호과의 의견을 따름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 · 제공 동의서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및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및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자 (사업자명:)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충전기 설치사업자) 충전기 설치 절차에 이용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충전기 설치실적, 전산처리 등 관련 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서식 4]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자 (사업수행기관)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설치장소		<input type="checkbox"/> 공동주택 <input type="checkbox"/> 사업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도로명주소	
충전기 설치내역	모델명	충전기 종류 (설치대수)	충전기 가액 (C=A+B)
		(기)	자부담(A)
			보조금(B)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지급요청액	금 원 (₩)	
<p>2024년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충전기를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4년 월 일</p> <p>영주시장 귀하 신청자 : (인)</p>			
첨부서류	1. 위임장 2. 설치완료 확인서 3. 사업자등록증(제조사) 4. 청렴이행서약서 5.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증 6. 하자보증서 7. 세금계산서 8. 제조사 통장사본 9. 사업수행기관 적격 확인 서류 10. 충전기 설치계약서		

[서식 5]

위 임 장

위 임 자 (위임을 하는자 - 신청자)	성 명 (기관명)	(인)인감도장/서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 사업수행기관)	업체명/대표자	(인)
	법 인 번 호 (사업자번호)	
	주 소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관련(보조금 지급 신청 서류 작성 및
보조금 수령 등)사항에 대해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위임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4년 월 일

위 임 자 : (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가능

[서식 6]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시설 설치완료 확인서

신청자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설치장소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사업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도로명 주소:		
설치내역	<input type="checkbox"/> 완속C타입 <input type="checkbox"/> 키오스크 <input type="checkbox"/> 전력분배형 <input type="checkbox"/> 과금형콘센트 (기) (기) (기) (기)		
충전기 종류	제작사: 판매사: 모델명: 설치용량: kw		
▼ 전경(전체) 사진		▼ 충전기 설치 사진	
2024년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충전기 설치를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인)	
사업수행기관:		(직인)	
영 주 시 장 귀하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영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영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영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제40조)

- ▶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1.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 제39조(벌칙) ①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또는 제15조(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1.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또는 제29조(검사)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영 주 시 장 귀하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포기서

1. 포기자

- 성명(기관명)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소 :
- 연락처 :

2. 사업 포기 내역

사업명	보조금액(원)	신청 충전기종
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원	
포기 사유		

상기와 같이 『2024년 영주시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상기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며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24. . .

포기자 성명(법인명):

(인)인감도장

영주시장 귀하